

광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5388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 종결 2021. 1. 29.

판결 선고 2021. 2. 17.

제 1 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53299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2018. 2. 27.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9.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382,86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0,382,868원으로 경정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연대보증인
1	2012. 9. 17.	D	170,000,000원	2013. 9. 17.	E
2	2016. 2. 19.	F	127,500,000원	2017. 2. 17.	E
3	2016. 2. 19.	G	127,500,000원	2017. 2. 17.	E

2) 그 후 수차례에 걸친 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42,5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8. 9. 13.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제2, 3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각 2019. 2. 19.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 1) B는 이자를 연체하여 2018. 5. 2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9. 5.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301,882,059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42,918,595원 +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129,563,173원 +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129,400,2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채권보전조치 등으로 인한 대지급금으로 2,171,450원을 지출하였다가 1,931,880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 잔액은 239,570원(= 2,171,450원 - 1,931,880원)이다.
- 2) 원고가 B, E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16592 구상금 사건에서 'B,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121,629원(= 301,882,059원 + 239,570원) 및 그 중 301,882,05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8. 11. 8.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한다).

다. B와 피고 사이의 양도담보계약

- 1) B는 자동화설비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는 B와 철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철판을 공급해 왔는데, 2018. 1. 기준 피고의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합계는 58,971,750원이었다. B는 2018. 2. 27.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H작성 증서 2018년 제212호로 'B는 2018. 2. 27. 피고로부터 58,971,750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9. 2. 27. 변제하기로 하며,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B는 적극재산으로 1,414,544,000원(= 토지 654,264,000원 + 건물 760,280,000원) 상당의 광주 광산구 1 토지 및 건물, 49,000,000원 상당의 천장주행크레인 2개, 7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건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

302,121,629원, J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121,638,799원, 주식회사 K에 대한 대출금채무 1,080,000,000원,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채무 12,667,570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108,827,322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채무 4,000,000원, L에 대한 채무 130,000,000원, M에 대한 채무 22,029,548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90,000,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4,529,460원, 피고에 대한 채무 58,971,750원 등 약 1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배당

1)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이 사건 물건은 31,365,633원에 매각되었다. 그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9. 18. 위 매각대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30,382,868원을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9. 9. 24.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B의 채무 변제력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B의 보증기간을 연장해 주었던 것에 비추어 피보전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는 B의 채무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거래재개만을 위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구상금채권은 2018. 9. 5.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 실제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약 3개월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원고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3 내지 15,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법정기일이 2017. 10. 25.인 부가가치세 12,667,57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7년 10월분부터의 건강 · 요양 · 국민 · 고용 ·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공사대금의 지급 지체로 J 주식회사가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8. 3. 22.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물건을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N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B가 피고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러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B와 2018. 1.경까지 계속적으로 물품거래를 하던 중 기존 물품대금 58,971,750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금액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B에 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가 작성한 B와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와 B 사이의 물품거래대금의 합계는 약 3억 원인 반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인 2018. 3. 26.경부터 2018. 7. 2.경까지 물품거래대금의 합계는 2,306,458원에 불과한 점, 피고가 B에게 공급하던 철판이 B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라거나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B에게 계속 공급하여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체결이 사업계속을 위한 부득이한 담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채권액이 피고의 배당액을 초과 하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전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피고 역시 원고와 같은 B의 채권자이므로 원고와 함께 배당금을 안분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써,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참조). 이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배당이 의 소송이 병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B의 일반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에게 직접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30,382,86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30,382,868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태, 판사 이지영, 판사 박옥희